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개정 2024. 1.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호봉	연구관	연구사
1	2,717,000	2,050,600
2	2,850,200	2,154,000
3	2,983,100	2,267,200
4	3,116,200	2,391,200
5	3,248,800	2,518,000
6	3,441,000	2,641,700
7	3,632,300	2,765,800
8	3,823,400	2,889,800
9	4,013,700	3,012,900
10	4,203,900	3,136,200
11	4,373,300	3,229,000
12	4,542,500	3,321,800
13	4,709,500	3,415,100
14	4,877,900	3,508,100
15	5,044,600	3,600,700
16	5,207,000	3,674,700
17	5,368,600	3,748,000
18	5,530,800	3,822,100
19	5,691,100	3,895,200
20	5,851,800	3,969,000
21	5,985,700	4,040,000
22	6,118,600	4,111,600
23	6,252,000	4,182,800
24	6,384,800	4,253,900
25	6,517,900	4,324,700
26	6,629,100	4,373,800
27	6,741,700	4,422,700
28	6,853,400	4,471,900
29	6,964,400	4,519,300
30	7,075,900	4,568,200
31	7,162,100	4,616,900
32	7,248,500	4,659,500
33		4,702,300
34		4,744,300
35		4,786,500
36		4,825,800

비고: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